

인천경마공원 유치제안서 동의안

인 천 광 역 시

# 인천경마공원 유치제안서 동의안

의안 번호	955
----------	-----

제출년월일 : 2009. 11.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이유

- FTA시대 농축산업의 대체산업 발굴 및 경마산업 육성발전과 건전한 국민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마사회(KRA)의 신규 경마장 설치 후보지 공모와 관련하여
- 인천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제안서를 한국마사회에 제출함에 있어 후보지의 부지제공 조건 및 레저세 감면조건 등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1. 사업계획

- 사업명 : 신규경마장 설치사업
- 위치 : 중구 남북동 산64-1 일원 (오성산 절토지)
- 설치면적 : 1,520km<sup>2</sup>
- 주요시설 : 경마장 및 부대시설 (트레이닝센터, 승마장 등)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 (2014년 개장목표)
- 사업시행자 : 한국마사회
- 투자예상금액 : 약 2,500억원 (부지매입비 제외)

## 2. 제안조건

### 가. 부지제공 조건(안)

- 제공형태 : 원형지 제공
  - 표고 50m 이하의 평탄지로, 경사도가 낮고 지장물이 없음
  - 마사회의 조성계획에 따라 시설배치 및 절토 가능
- 부지제공 조건

제공방법	소유자 구분	연간 임대료	인상률 (%)	임대기간	임대기간 만료 후, 처리조건
유상임대	공항공사 818,126㎡ (53.8%)	공시지가의 5% (2.3천원/㎡)	0%	5년	마사회 계획에 따라 연장 또는 매각
	국공유지 191,540㎡ (12.6%)	재산평정가격의 5% (3.8천원/㎡)	0%	5년	“
	사유지 510,024㎡ (33.6%)	재산평정가격의 5% (7.2천원/㎡)	0%	5년	“

### 나. 레저세 감면 조건(안)

	레저세 감면율	감면기간	비 고
본장 분	10%	20년	
타지역 분	50%	20년	

### 참고사항

- 인천경마공원 유치 사업계획 1부
- 관련법령 검토 및 발체사항 1부. 끝

# 인천경마공원 유치 사업계획

(후보지 제안서 요약내용)

2009. 11.

## 인천경마공원 유치 사업계획

### □ 사업개요

- 사업명 : 신규경마장 설치사업
- 위치 : 중구 남북동 산64-1 일원 (오성산 절토지)
- 계획면적 : 1,520,000m<sup>2</sup>
- 주요시설 : 경마장 및 부대시설 (트레이닝센터, 승마장 등)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 (2014년 개장목표)
- 사업시행자 : 한국마사회
- 투자예상금액 : 약 2,500억원 (부지매입비 제외)

### □ 제안서 평가분야 및 배점

평가분야	배 점	주요 평가항목	배 점
신규경마장의 부지 적합성	250점	부지규모, 경사도, 형상 현황	100
		공적 규제 현황	80
		소유 및 지장물 현황	70
신규경마장의 입지여건	350점	수요권 지역경제 및 인구 현황	200
		접근성 현황	100
		주변개발계획 및 접근성 개선 계획	50
사업추진의 효율성	200점	<u>지자체의 부지제공 조건 등(시의회 동의)</u>	<u>100</u>
		인허가·행정지원 계획	50
		지역주민 의견 수렴	50
말산업 발전을 위한 공익성	200점	<u>지자체의 레저세 감면 조건(시의회 동의)</u>	<u>150</u>
		말산업 발전 지원현황 및 계획	50
총 점	1,000점		1,000

## 인천경마장의 유치효과

### □ 세수(지방세) 증가

- 마권매출액의 10%가 레저세로, 레저세의 40%가 지방교육세로 지자체에 납부됨
- 2008년 기준 경마관련 지방세 납부액은 경기도가 6,820억원, 부산과 경남은 2,370억원임
  - 두 지역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인천은 연간 4,600억원의 지방세수가 예상됨

### □ 시민을 위한 레저공간의 확대

- 경마트랙뿐만 아니라 승마장, 말 테마파크, 사계절 썰매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됨
- 경마가 열리지 않는 주5일은 레저공간으로 일반시민에게 개방
- 대상지는 기존 개발계획상 관광시설용지이고, 용유·무의지역이 관광레저복합도시로 개발되기 때문에 시너지효과 기대

### □ 지역경제 활성화

- 관광객 유입에 따른 소비증대로 지역내 경제과급효과 발생
  -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면 외지인과 외국인의 방문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 공항 환승객 투어 프로그램으로의 활용가치도 높음
- 지방세 수입증가에 의한 복지시설 확충 등 지역개발 가속화
- 향후 말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승마활성화 인프라 구축

### □ 아시안게임 승마장 대체 효과

- 아시안게임을 위한 승마장 건설비용(100억원)을 절감
  - 경마장이 2014년 개장 예정이고 승마장도 동시에 건설됨

## 경마장 유치의 당위성

- 경마는 일부 사회주의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시행
  - 경마는 경주마 생산과 승마 등 말 산업과 연계되어 있어 타 사행성 산업과 성격이 다름(경륜과 경정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만 실시되고 있음)
  - 사행산업은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으므로 주요 선진국들은 1차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고 수익의 사회 환원도가 높은 경마산업을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경마에만 온라인 베팅을 허용하고 있음. 이는 마필 육성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마산업을 카지노 등 타 산업에 비해 합법적 관리가 유리하기 때문임.
- 경마장의 공원으로 인한 레저기능 증대
  - 주 5일은 가족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경주일 방문객 중 다수가 베팅을 하지 않거나 소액베팅을 하는 경우가 많음
- 매출에서 지역주민의 부담이 적음
  - 경마장은 본점 매출보다 지점 매출이 많음
    - 경마매출은 지점(스크린 경마장)매출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며 교차투표로 인한 타경마장 매출의 비중도 높음.
    - 따라서 인천경마장 매출의 과반수 이상이 타지역 교차투표로 인한 매출이 되므로 지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은 낮음.
  - 본점 방문객 중 지역주민 이용비중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예상
    -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우수하고 공항과 인접한 점을 감안하면 외지인과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사행성의 가장 큰 폐해는 불법 사설 경마장에서 발생하고 있음

# 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제안서(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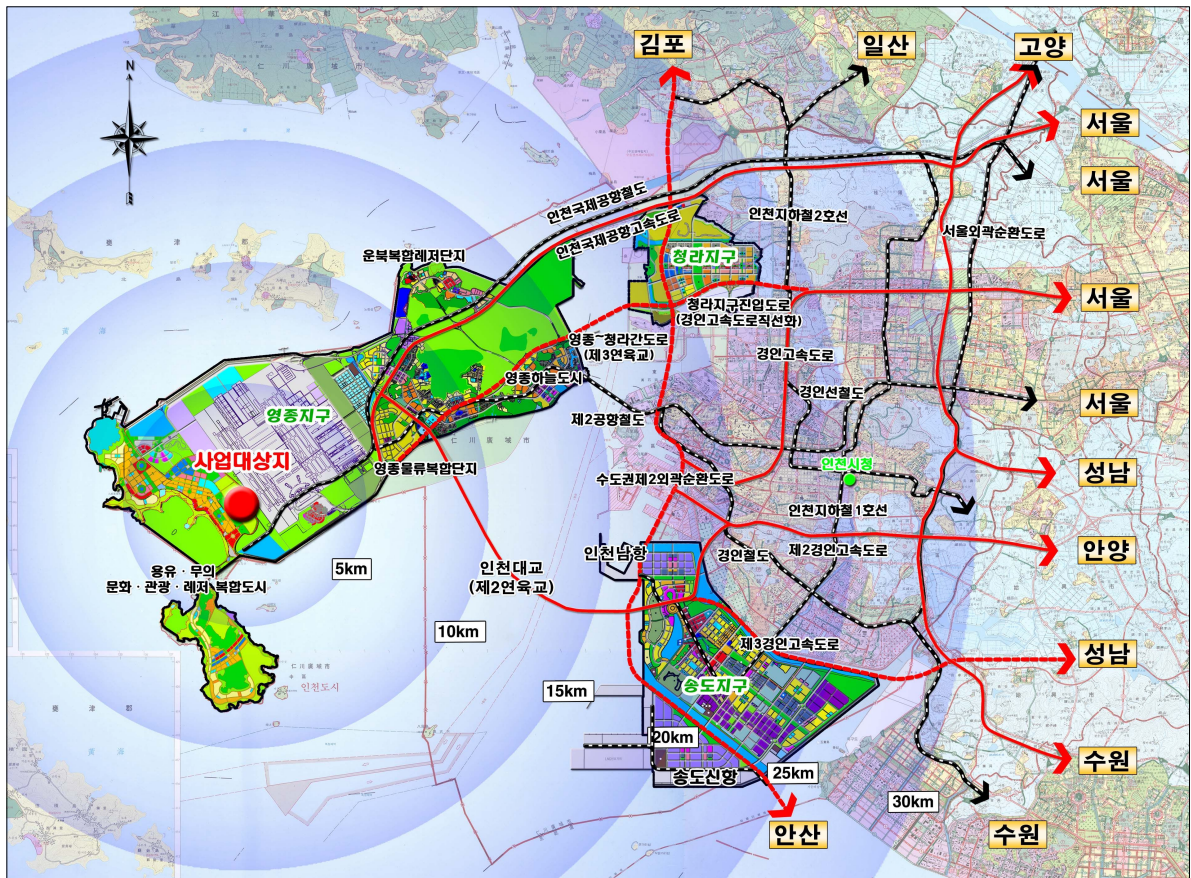
## 1. 신규 경마장 부지 적합성

### 가. 부지규모, 경사도, 형상 현황

#### □ 입지여건

-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입지하여 수도권뿐만 아니라 국제비즈니스 및 중국 관광수요까지 흡수 가능
- 비행거리 3시간반 내에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61개, 20억명의 인구가 분포하는 거대 배후시장 보유
-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통해 1시간 내에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서 접근 가능

[ 위치도 ]





## □ 부지규모

- 경마장, 트레이닝센터, 승마장 등의 효율적인 입지가 가능하도록 부지면적 1.52km<sup>2</sup>이상으로 계획
- 부지확보 용이성, 조성비 절감, 해양경관 조망 및 항공소음 최소화를 고려하여 지구계 설정

## □ 경사도 및 표고

- 후보지 대부분이 절토가 완료된 지역으로서 평균경사는 11.3%이며, 경사도 10%이하가 전체의 68.1%로 완경사를 이루고 있어 입지에 적합함

[ 항공사진 ]



## 나. 공적 규제 현황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 단지내 위치하고 있으며, 기 수립된 개발계획과 일부 배치 되어 변경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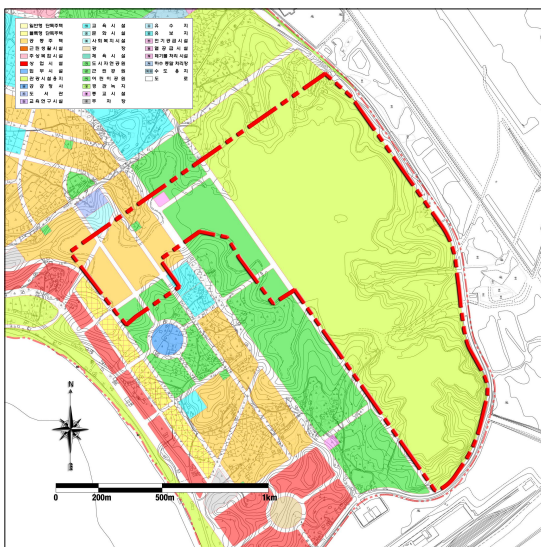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최근 승인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상 관광시설용지 등의 개발용도로 반영된 지역으로서 실시계획 승인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제처리로 병행 추진 가능함
- 공항고도제한(해발 52m)으로 건축물 건축 제한을 받으나, 대부분이 부지정지(45m내외) 완료된 지역으로서 부분적인 절토를 통해 건축물 건축이 가능함

### □ 항공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 항공기소음 영향도(WECPNL) 75미만 지역으로서 시설물 설치제한, 항공기 소음한도 및 가축 소음피해배상 기준에 저촉되지 않음

[ 토지이용계획도 ]



[ 도시관리계획결정 현황도 ]



## 다. 소유 및 지장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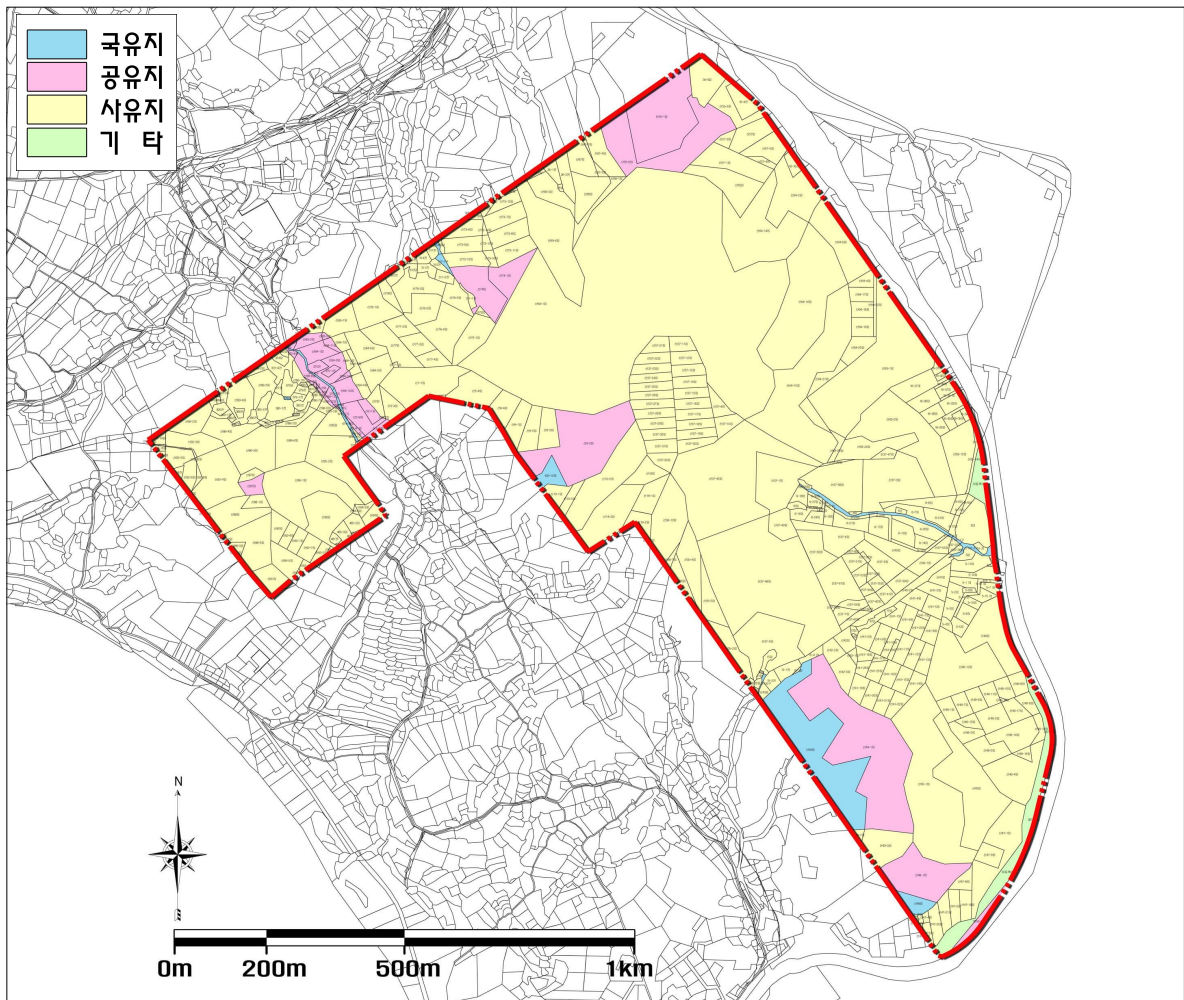
### □ 토지 소유 현황

- 국유지 39,164m<sup>2</sup>, 공유지 152,376m<sup>2</sup>를 합한 면적은 191,540m<sup>2</sup>로서 국·공유지는 전체면적의 약 12.6%를 차지함
- 사유지 면적의 약 62.3%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부지로서 부지확보가 용이함
  - 사유지 면적 : 1,328,150m<sup>2</sup>
  - 사유지중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 818,126m<sup>2</sup>

### □ 지장물 현황

- 가옥 등 건축물이 적고, 문화재가 없어 사업추진이 용이함

[ 소유별 현황도 ]



## 2. 신규경마장 입지여건

### 가. 수요권 지역경제 및 인구 현황

#### □ 수요권 도시 및 인구 현황

- 후보지로부터 반경 30km에 접한 시급 이상 수요권 도시는 인천광역시를 포함하여 부천, 안산, 시흥, 김포, 화성시임
- 수요권에서 제외된 서울시, 고양시 등 수도권 및 중국을 비롯한 해외관광객 고려시 타 후보지역에 비해 우수한 경쟁력 보유
- 2005년 기준 수요권 도시내 4,880,594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내총생산이 817,654억원(2005년 기준) 등 배후도시가 잘 갖추어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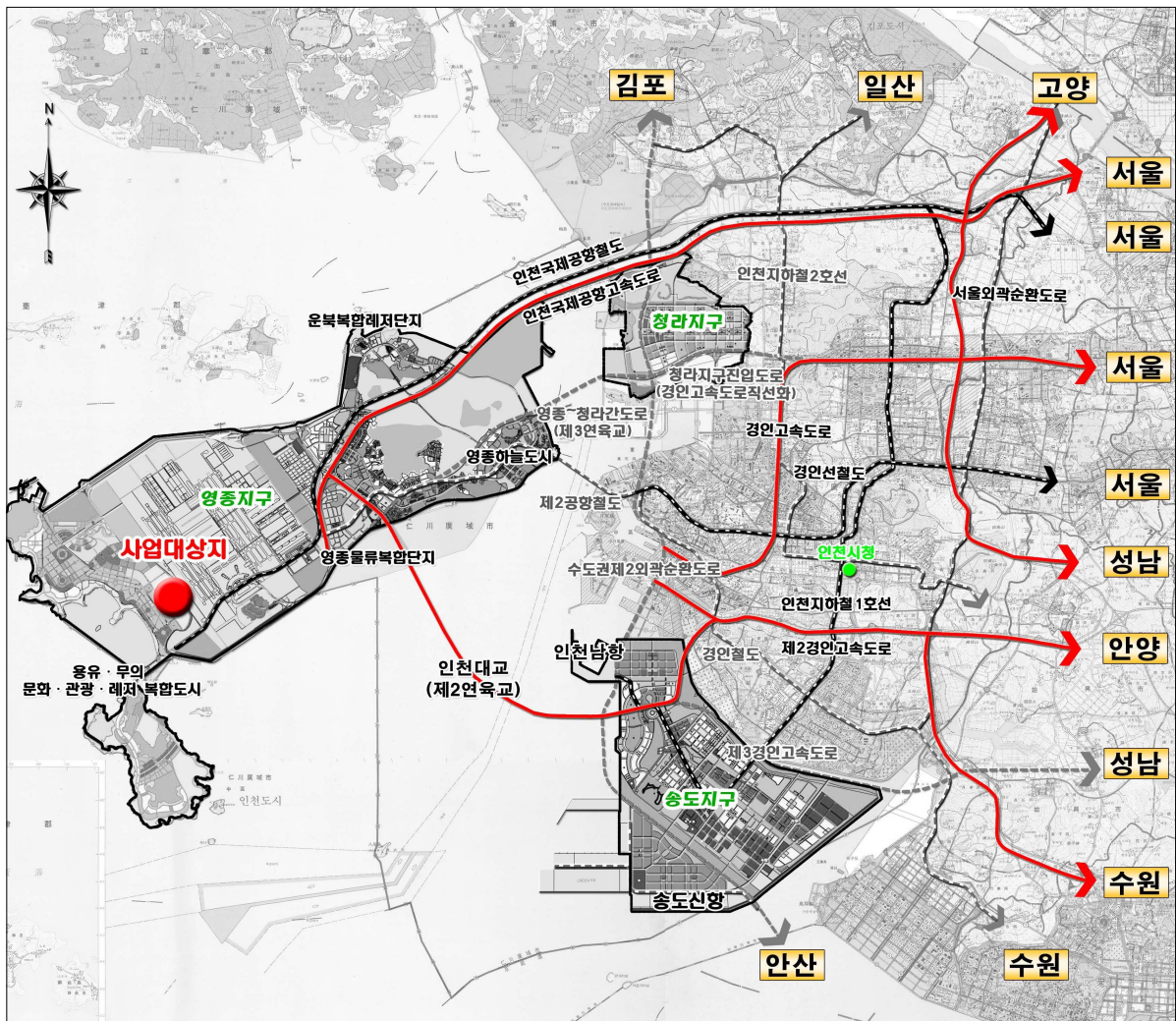
[ 도시위치 현황도 ]



## 나. 접근성 현황

- 동서방향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공항철도, 남북방향의 인천대교(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계)를 통해 수도권 및 주변 지역과의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 경마장 후보지는 남·북측으로 영종남로(15.4km, 4차로), 영종북로(12.7km, 4차로)가 위치하여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와 연계되어 수도권 및 주변 지역에서의 접근이 용이함
- 또한 남북방향으로 영종남·북로를 연결하는 영종서로(0.9, 2차로)가 있어 후보지와의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함

[ 광역교통현황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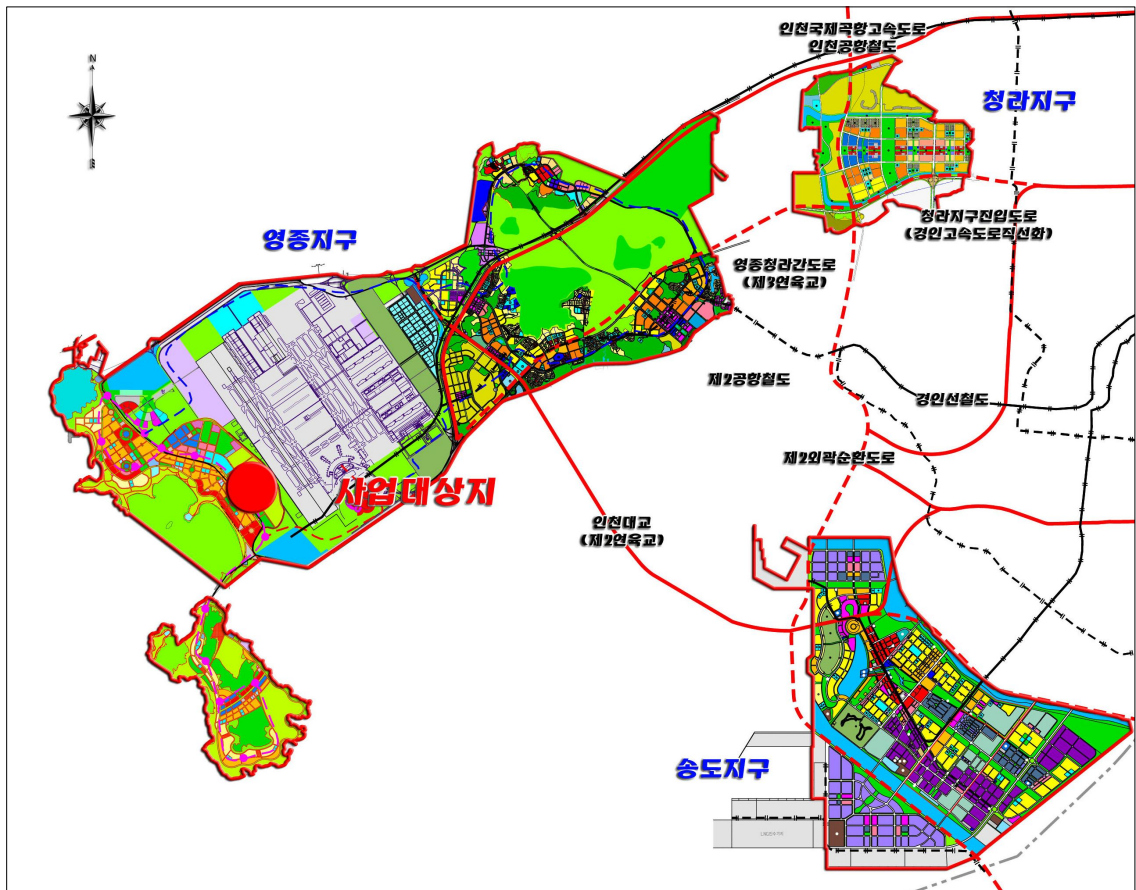


## 다. 주변개발계획 및 접근성 개선계획

### □ 주변개발계획

- 동북아 비즈니스 실현을 위한 21세기 최고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목표로 영종, 송도, 청라 3개 지구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경마장 건설사업 여건이 매우 우수함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개요
  - 면 적 : 209.4km<sup>2</sup>(3개 지구)
  - 사업기간 : 2003 ~ 2020년
  - 계획인구 : 632천명
  - 주요개발계획 : 영종하늘도시,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국제업무단지, 첨단산업클러스터, 송도국제복합화단지, 로봇랜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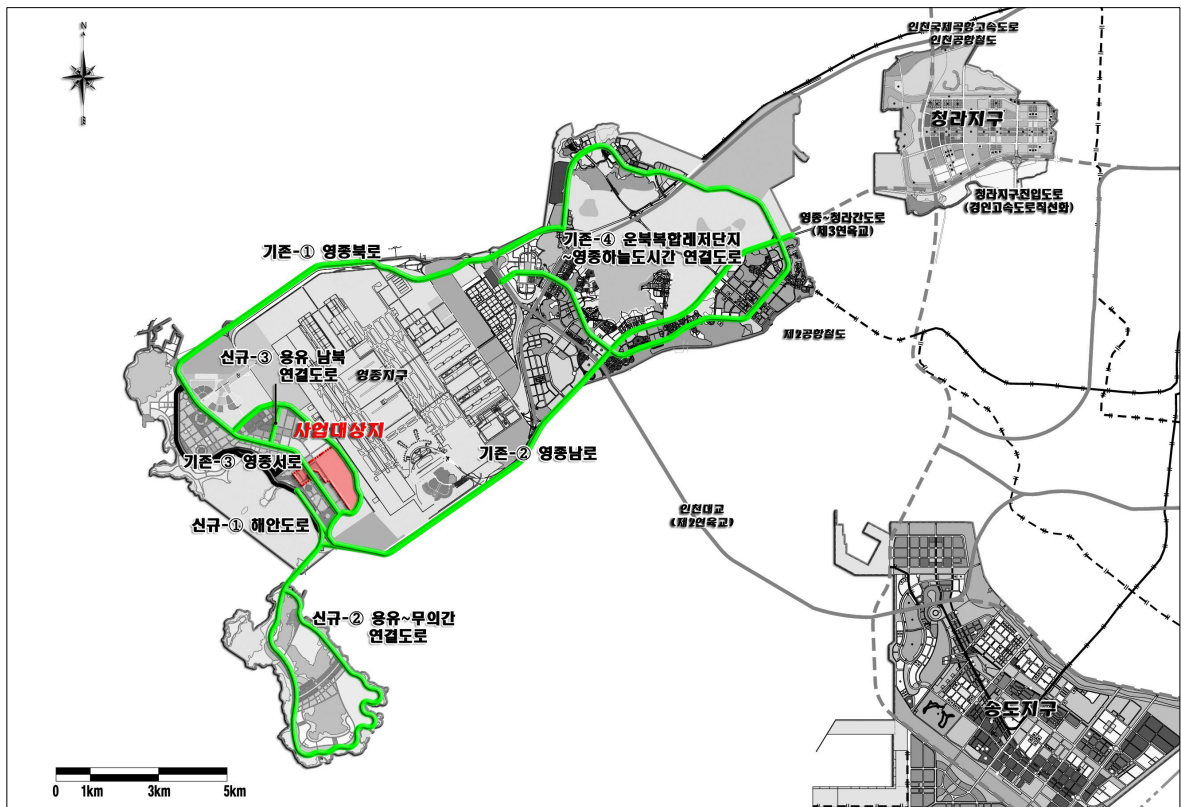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



## □ 접근성 개선계획

- 영종지구 광역접근성 향상을 위한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영종~청라간도로(제3연육교), 청라지구진입도로, 제3인경인고속도로 및 제2공항철도 등의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이 추진계획 중에 있음
- 기존 도시계획을 반영하여 영종북로·영종남로·영종서로 및 운북 복합레저단지 ~ 영종 하늘도시간 연결도로 등 건설사업이 완료될 경우 광역교통망과의 연계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신교통시스템(자기부상열차) :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와 공항철도 용유역을 연결하는 신교통시스템(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L=6.1km)이 추진중에 있으며, 용유·무의 연결노선(2단계) 및 영종순환노선(3단계)을 단계적으로 구상중에 있음

[ 간선도로 및 접근로 개선계획도 ]



### 3. 사업추진 효율성

#### 가. 부지제공 조건

□ 총면적 : 1,519,690m<sup>2</sup>

제공방법	해당면적 및 비율	연간 임대료	인상률 (%)	임대 기간	임대기간 만료 후 처리조건
무상임대	-				
유상임대	공항공사 818,126m <sup>2</sup> (53.8%)	공시지가의 5% (2.3천원/m <sup>2</sup> )	-	5년	마사회 계획에 따라 수용시 매각
	국공유지 191,540m <sup>2</sup> (12.6%)	재산평정 가격의 5% (3.8천원/m <sup>2</sup> )	-	5년	마사회 계획에 따라 조치
	사유지 510,024m <sup>2</sup> (33.6%)	재산평정 가격의 5% (7.2천원/m <sup>2</sup> )	-	5년	마사회 계획에 따라 수용시 매각
유상매각	-	-			

#### □ 임대기간 만료후 처리조건

- 개장 후 5년 이내에 인천시가 공항공사 소유지를 수용하고 전체 부지를 마사회에 매각
  - 관련법 개정을 통해 무상양여가 가능해지면 무상으로 제공하되, 불가할 경우 공시지가에 유상매각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레저세 감면율을 추가 확대하여 마사회가 실질적으로 매입대금을 분할 회수할 수 있도록 협의



## □ 법적검토

- 무상양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 공유재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공공기관으로의 무상양여는 가능하지 않음
- 무상임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임대료의 감면사항을 시조례로 정하도록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 토지에 대해 유상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무상임대는 가능하지 않음
- 유상임대 : 공유토지의 임대료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해 토지재산평정가격의 50/1,000 임

## □ 부지공급 형태

- 경마장 후보지가 위치한 오성산은 공항공사에 필요한 토석 채취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장애구릉 제거를 위해 기절토되어 대부분 45m내외의 평지로 구성되어 있음
- 후보지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최고고도지구(해발52m)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마장 시설배치계획에 맞추어 일부 추가 절토가 필요하므로 부지의 제공형태는 형태의 원형지 형태로 제공함

## 나. 인허가 · 행정지원 계획

### □ 인허가 절차

- 경마장 후보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개별 인허가 절차없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통해 단기간내 절차완료 가능
  - 1단계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지식경제부장관)

- 2단계 :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승인(인천광역시장)

- 1단계 8개월, 2단계 6개월, 총 14개월내 인허가 절차 이행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련된 인허가에 대해 “인천경마공원” T/F팀을 구성하여 인허가 서류의 작성과 제출, 협의 전 공정을 수행토록 할 계획임

#### □ T/F팀 구성 계획

- 현재 “인천경마공원”유치를 위한 실무 T/F팀이 운영중이며, 유치이후 “인천경마공원”조성 추진단(가칭)을 운영할 예정임
- 운영기간 : 후보지 확정시 ~ “인천경마공원” 개장시까지
- 구성인원 : 15인 내외로 구성
- 구성장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내
- 주요업무 : 토지보상업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허가 등 인허가 업무, 인천지역 말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발전 업무 등

#### 다. 주민의견 수렴방안

- 경마장 후보지가 위치한 영종지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단지 개발계획상 관광시설용지로 기계획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주민에게 인식된 개발사업임.
- 기계획된 관광시설용지에 경마장 유치시 새로운 민원발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심리적 갈등요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임

## 4. 말산업 발전을 위한 공익성

### 가. 레저세 감면조건

#### □ 지방세 감면조건의 중요성

- 평가기준상 총배점 1,000점 중 레저세 감면조건은 150점임
- 타 평가분야는 정성평가/상대평가방식으로 등급간 격차가 배점의 15%에 불과하여 1, 2위 차이가 최고 30점에 불과함
- 정량평가/상대평가인 레저세 감면조건은 배점차이가 90점까지 가능한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임

#### □ 감면조건 설정시 고려사항

- 부경경마장은 개장 후 5년간 지점분 지방세의 25%를 감면 (이 조건은 입지가 결정된 후의 결과이므로 공모에 적용 곤란)
- 인천은 타 지자체에 비해 본점 매출의 비중이 높을 것이므로 평가시 가중치가 5%에 불과한 본점 레저세는 소폭 감면하고, 지점 레저세를 대폭 감면하는 것이 유리함.
-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면액은 사회에 환원됨

#### □ 레저세 감면 조건

- 개장 후 20년간 본점 레저세 10%. 지점 레저세 50% 감면

레저세 감면율		감면기간	비고
본장 분	10%	20년	
타지역 분	50%	20년	

#### □ 레저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변화 예측

- 감면 전 세수 : 20년간 9조1,746억원(순현재가치: 4조 7,138억원), 연평균 4,587억원
- 감면 후 세수 : 20년간 6조8,478억원(순현재가치 : 3조 4,1968), 연평균 3,424억원

## 나. 말산업 발전 지원현황 및 계획

### □ 지역특화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말 산업기반 조성

- 우수한 경주마의 보급과 경주마의 휴식, 휴양을 위해 경북, 전남내 말산업 단체와 협력체계구축 및 투자

### □ 무의관광지내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및 트레킹코스 추진

- 향후 지역 말 산업기반 구축 후 경주마의 휴양, 조련시설 제공을 위한 휴양조련시설 및 트레킹코스를 건설하며, 우리시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녹색성장동력으로 육성

### □ 경마공원내 공원화 사업의 추진

- 시민의 건전한 레저공간 확충을 위해 레저세의 일부를 감면하여 인천경마공원내 공원화 조성사업 추진
- 주요사업 : 생태공원, 스포츠센터, 말박물관, 야외 체육공원

### □ 지역 축제의 요소로 활용

- 경마장과 경정장을 연계한 인천 문화예술축제 개최
  - 현재 경마공원(서울, 제주, 부산)은 매년 계절별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경정장(미사리)은 예술공연과 함께하는 축제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 지역주민의 여가활용과 이벤트형 관광상품화 추진
  - 일반인의 참여를 통해 건전한 레저스포츠로의 인식 변화와 장외 퍼레이드행사를 통해 지역사회로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 제공

### □ 향후 20년 단위의 장기 말 산업육성 Road Map과 10년 단위의 Action Plan을 수립하여 시행

- 인천시, 한국마사회, 말 산업 관련단체와 연계하여 수립

#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다음 각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

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5-4>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 □ 인천공항공사 고정자산관리규정

제23조(임대료 등) ①부동산의 연간 임대료는 당해 부동산의 가액에 임대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임대요율은 임대물의 위치, 업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 6. 26.>

②전항에 의하여 산정한 토지 임대료가 직전 년도의 임대료에 비하여 9.5%를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에는 9.5%만 증감되는 것으로 조정한다. <신설 2007. 6. 26.>

③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으로 한다.

## 1. 토지를 임대할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다만, 동지가의 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의한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 2. 건축물을 임대할 경우

건축물의 바닥이 차지하는 토지면적 및 임차인이 전용하는 토지면적의 개별 공시지가에 건축물의 감정가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건축물을 감정평가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있다.

④삭제 <2008.3.19>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2.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3. 공사가 전액출자한 종속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4.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공항 상업시설의 유치등 공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장이 임대기준 및 임대료를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⑦공사는 토지임차인 등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경우 당해 점유부분에 대하여 제1항 임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5.3.11>

1. 임대차계약 면적을 초과하여 공사의 토지를 점유한 경우
2. 임대차계약의 해지,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공사의 토지를 점유한 경우
3. 기타 공사의 허락없이 공사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 □ 인천공항공사 투자유치사업 업무처리규정

제7조(사용료 납부기준) ① 공항공사는 투자자가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한다.

② 사업시행자에 부과하는 사용료의 최저기준은 공항공사의 고정자산관리규정 및 관련규정, 사업의 특성, 수익성, 사업시행으로 인해 공항공사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거나, 사업신청자가 제안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③ 공항공사는 투자유치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건설하는 기간에는 영업목적등을 위한 사용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부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지 및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05.29>

1. 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기반시설을 조성 또는 건설하는 경우
2. 공사 고정자산 관리규정의 사용료 면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투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부득이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때



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각각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변경절차에만 준용한다.

제8조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경제자유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8. 「연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9.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10.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1.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 제8조의2 (행위의 제한) 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대집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30]

**제9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제5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09.1.30]

## □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8조 (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1998.12.31, 2008.2.29>

## □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30조의3(한국마사회에 대한 감면) ①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부산경남경마공원(이하 "경마장"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액 중 「지방세법」 제1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장외발매소분(부산 및 경남 안의 장외발매소 발생분을 제외)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다만, 경마장의 공익적 공원화 조성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연도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규모를 축소한 경우(6월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도 포함한다)와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공원에 대하여 부산시민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부산시민에게 입장료(경마가 개최되는 경마일의 입장료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레저세의 감면을 중단하고 이미 경감한 레저세액을 추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260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세는 경감된 레저세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감 전 레저세액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06. 1. 4>